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14호 2019. 05. 23.(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 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63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3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14호

사천시 고시 제 2019-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5. 2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19 - 6호
2. 점용·사용 변경허가 연월일 : 2019년 05월 14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당초 :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 변경 :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및 요트,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대방동 681-2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1,375.44㎡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8.08.24.~2023.08.23.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이삼수 외 16인(삼천포유람선협회)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유람선길 42(대방동)

사 천 시 공 보

제614호

사천시 공고 제2019-63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5. 2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5. 23. ~ 2019. 6. 6.(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01버1688	A6 3.0 TDI quattro	김*희	2019. 5. 16.	소유자 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